

오하자산운요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변경	비고
제 2 조(목적)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(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인·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)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중략 14. 기타 위 각 호의 목적달성에 직·간접적으로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	제 2 조(목적)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(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인·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)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중략 <u>14.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4 에따른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모집, 설립, 출자 및 운용 등에 대한 업무 <신설 2024.03.29></u> <u>15. 기타 위 각 호의 목적달성에 직·간접적으로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</u>	
	부칙 <u>이 정관은 2024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</u>	